



인천공항세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성화 대책 안내**

1. 평소 관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리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관련업체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3. 그러나, 국회 및 언론 등에서는 아직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이 미흡하고,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특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주민번호 수집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특송화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활성화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15.2.6까지 계도기간)에 따른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5.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전에 관련 해외전자상거래 업체에 동 사실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특송업체(신고인)별 검사율 차등적용('14.12.1. 시행)
 - 전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12월은 11.20~30) 따라 검사선별
 - 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을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에 반영('15.1분기 평가시 시행)
 - 10점(가점포함) ~ -5점(감점) 까지 차등적용
 - 다.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수입신고 배제('15.1.1. 시행)
 - 라.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건에 대하여 서류제출 선별('15.2.1. 시행)
 - 마.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주민번호 사용 금지)('15.3.1. 시행)
 -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 제출
- ※ 외국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여권번호를 입력해도 인정. 끝.

인천공항세관장



수신자 관내 특송업체, 한국관세사회인천공항지부

관세행정관 권광욱

관세행정관 김재석

특송통관1과 전결 2014. 11. 12.
장 김수원

협조자

시행 특송통관1과-5159 (2014. 11. 12.) 접수

우 689-89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인천공항세관 / www.customs.go.kr/airport

전화번호 032-722-4323 팩스번호 032-722-4339 / phil@customs.go.kr / 비공개(5)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